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8
----------	-----

2025. 10. 1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4. 11.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사례 정비, 조문 간소화 및 내용 현행화 등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체계 정비 및 중복 조문 삭제, 불필요한 규정 정비
-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절차 정비
- 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8 22. ~ 2025. 9. 12.) 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선정에 관한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함(제5조제2항)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¹⁾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함. 다만,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교부되더라도 근거 법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²⁾

○ 위임 규정의 명시

- 1988년 5월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위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약 15년간 이 조례의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으로 두었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다음해인 2022년부터 해당 법령을 상위법령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였음.

○ 조문 정비의 필요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관련 규정을 입안기준에 부합

1) 법인·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포함함.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하도록 정비하고, 실제 업무에서 이행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조문을 간결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 상위법령의 개정

- 2023년 4월 정부는 기존의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적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³⁾

< 2023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

-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과 확정된 예산 의결 내용을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함.
-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성과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은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탐e) 활용하여 부정수급 방지, 투명성 제고
- 지방보조사업 정보의 요청·보호·파기 기준 마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 개선

나. 검토 내용

○ 목적 규정

- **안 제1조**는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임을 명시하는 것임.
- 다만, 이 개정조례안 제3장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 정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령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4)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목적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안 제2조는 이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해서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는 것임. 다만, 다른 법령과 이 조례와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안기본원칙인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상위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목적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보조대상 사업

- 안 제3조 각 호의 내용은 순서나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내용과 유사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광역 보조 재원에 의한 보조를 덧붙였음. 그러나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므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 그 상위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다시 중복하여 기재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자치법규 입안 기준 참조)

< 상위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p>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p> <p>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u>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u>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u>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건
<p>제3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광역 보조 자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p>(원안의 조 제목은 보조대상 사업이지만 조문 내용은 보조 제한에 관한 것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공금 지출로 보조 가능한 경우가 이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한정되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상위 법령과 중복됨</p> </div>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고,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권,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안 제4조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상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기능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어 보임.

○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교부제한에 관한 내용이고,
-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정산검사,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정하였는데 대부분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안 제19조제2항에 기재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의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 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건
<p>제19조(성과평가)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div> <p>(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임)</p>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제출주체(의무):** 지방보조사업자
- **제출사항:**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첨부: 정산보고서, 그 밖에 실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서류)
- **제출기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예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미 실적보고를 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p>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align="center">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출 의무 (법 제17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음)</p> </div> <p>제20조(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align="center">실적 보고 심사 의무 (법 제19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align="center">심사 결과 통지 의무 (법 제19조제2항에 기재되어 있음)</p> </div>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p>	<p>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p> <p align="center" style="color: green;">(실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향후 규칙으로 정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10px; 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 <p align="center" style="font-size: 2em; color: blue;">?</p> </div>

- 안 제20조제1항·제2항은 이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므로 이를 중복하여 기재한 규정은 조례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임.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실적보고서에 정산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즉, 구청장은 법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면서 거기에 첨부된 정산보고서도 검증하는 것이므로 ‘실적보고서 심사’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고, 지방보조사업의 실적과 관련해 구청장이 정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0조제3항의 경우 2025. 1. 1.자로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필요함.

○ 포상금에 관한 사항

- 안 제23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임.
- 안 제23조제1항의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시행령 제21조가 아니라 제21조의2이므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안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제3항·제4항·제5항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_____ _____ 같은 법 시행령 <u>제21조의2</u> 에 _____ _____ _____.

- 참고로 서울시 종로구는 2025년 9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명시하였고,⁵⁾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포상금에 관해서 별도의 장을 신설하였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장 >

-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및 접수
- 위반행위 신고 또는 고발에 따른 결과 통지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금액
- 포상금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제한
- 포상금 이의신청
- 포상금 환수

다. 종합 의견

○ 조문 정비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간결성을 살리고자 하였음. 다만,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조문 정비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이 부족한 표현, 잘못된 연계 조문 기재 등 미비점이 발견됨.
-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3년 4월에 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데, 상위법령 개정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임.

5) 해당 조례의 위원회 기능 규정 참조.

○ 규칙 제정 여부 검토

- 이 조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해야 하는 상세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70375호]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공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공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생략)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생략)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생략)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78호]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3.] [행정안전부령 제438호]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